

□ 과기부분야(1건)

건의요지	부처의견	심의결과
<p>1. 동위원소 및 방사선장치 수출절차 간소화</p> <p>○ 동위원소제품 수출승인시 원자력안전기술원에 등록을 하면 방사성동위원소협회가 그 등록된 내용을 활용하여 승인토록 절차 간소화 요망</p>	<p style="text-align: center;">&lt; 일부수용 &gt;</p> <p>○ 원자력안전기술원은 동위원소의 판매의 허가심사를 하고, 방사성동위원소협회는 이의 수출입요건을 확인하는 것으로 그 목적이 각각 다름</p> <p>○ 다만, 방사선기기 수출입시 방사선기기설계승인여부는 온라인상으로 공동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p>	<p style="text-align: center;">&lt; 일부수용 &gt;</p>

□ 농림부, 산림청분야(7건)

건의요지	부처의견	심의결과
<p>1. 농업진흥지역내 행위제한 완화(농림부)</p> <p>○ 농업진흥구역안에서 ‘전기공급설비’ 설치가능(농지법 제34조제1항제7호)</p> <p>○ 그러나, 농지업무편람에는 전기공급설비인 ‘변전소’건설행위를 제한</p> <p>- 상위법에 상충되는 농지업무편람을 개정하여 변전소 허용</p>	<p style="text-align: center;">&lt; 수용 곤란 &gt;</p> <p>○ 전주·도로 등과 같이 거리단축 등이 불가피한 시설에 한해 농업진흥구역안에 설치 허용</p> <p>○ 변전소는 이와같은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불허</p>	<p style="text-align: center;">&lt; 수용곤란 &gt;</p> <p>○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 및 농지의 효율적 이용·보전을 위해 농업진흥구역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함</p> <p>○ 다만, 국민의 혼란방지를 위해 전기공급설비중 허용되는 시설과 허용되지 않는 시설을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권고함</p>

<p><b>2.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 소독설비 설치 면제(농림부)</b></p> <p>○ 비료제조시설에 전염병예방 소독이 필요한지 여부를 조사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소독설비설치대상에 축분원료 비료제조업자 제외</p>	<p style="text-align: center;"><b>&lt; 수용 곤란 &gt;</b></p> <p>○ 비료제조시설을 포함한 이유는 축분수송 차량에 의한 질병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소독시설을 출입구에 설치하여 분뇨가 묻어 있는 차량바퀴를 소독하기 위한 것으로 존치 필요가 .</p>	<p style="text-align: center;"><b>&lt; 수용 곤란 &gt;</b></p>
<p><b>3. 석탄광의 경우 산림훼손복구비 예치 면제(산림청)</b></p> <p>○ 석탄광의 경우 석탄합리화사업단에서 산림복구를 대신하고 있으므로, - 산지관리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훼손복구비 예치 의무 면제</p>	<p style="text-align: center;"><b>&lt; 수용 곤란 &gt;</b></p> <p>○ 석탄합리화사업단의 사업 목적은 산림복구 보다는 광해방지가 주목적이며, ○ 산림복구비는 복구 후 환급하고 있으므로 현행과 같이 예치하는 것이 바람직</p>	<p style="text-align: center;"><b>&lt; 별도 검토 &gt;</b></p> <p>○ 동 사항은 현재 규제개혁기획단에서 추진중인 “산림제도 개선방향”에 포함되어 ○ 개선작업 추진중에 있으므로 별도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p>
<p><b>4. 산지관리법상 절개면의 수직높이를 15m로 제한규정 완화(산림청)</b></p> <p>○ 산지관리법상 절개면의 높이를 15m로 제한 ○ 변전소 등 전력시설물 설치시 절개면의 높이가 15m를 초과할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의 개선요망</p>	<p style="text-align: center;"><b>&lt; 수 용 &gt;</b></p> <p>○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절개면의 높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 변전소 관련 법령에서 근거를 마련할 경우 15m이내 제한규정이 제외될 수 있음</p>	<p style="text-align: center;"><b>&lt; 수 용 &gt;</b></p>
<p><b>5. 광산의 폐석재활용으로 광해 방지(산림청)</b></p> <p>○ 채광계획인가(광업법)를 받은 경우에는 채광과정에서 발생하는 석재를 별도의 채석허가없이 판매할 수 있도록 산지관리법 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b>&lt; 수용 곤란 &gt;</b></p> <p>○ 광업권자라 하더라도 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광석을 석재로 사용,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광업권으로서 보호받는 범위를 벗어나므로 채석허가 등을 받아야 함</p>	<p style="text-align: center;"><b>&lt; 수용 곤란 &gt;</b></p>

<p><b>6. 대규모 석회석광산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개선(산림청)</b></p> <p>○석회석 노천광산의 경우에 산지관리법시행규칙 별표6 절개면 높이 제한(15m) 완화</p> <p>- 산업자원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사업의 성격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광산보안법에 의할 수 있도록 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b>&lt; 일부 수용 &gt;</b></p> <p>○절개면의 수직높이 제한은 산림환경을 조기 복구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 기관장의 요청에 의해 기준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치 아니함</p> <p>- 다만, 계단식 개발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광산의 경우 계단안에 설치하는 소단의 높이를 매5m마다 설치토록 반영예정</p>	<p style="text-align: center;"><b>&lt; 일부 수용 &gt;</b></p>
<p><b>7. 백두대간관리구역내 채광제한(산림청)</b></p> <p>○ 2005년부터 시행예정인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시행령”에 기 개발중이거나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사업에 대한 계속적 개발 보장 요망</p>	<p style="text-align: center;"><b>&lt; 수용 &gt;</b></p> <p>○기 개발중인 지역은 동법 부칙의 규정에 의해 개발행위가 종료될 때까지 보장</p> <p>○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경우, 훼손된 지역을 복구한 면적범위내에서 석회석광산개발을 허용하는 총량제 실시</p>	<p style="text-align: center;"><b>&lt; 수용 &gt;</b></p>

**□ 정보통신부 분야(1건)**

건의요지	부처의견	심의결과
<p><b>1. 고객정보보호조치 이행의무 및 정보보호 안전진단에 대한 컨설팅에 관한 의무 시행조항 개선</b></p> <p>○정보보호책임자·관리자·담당자를 지정 토록하고, 고객정보보호를 위한 본인인증·결재정보 암호화 등을 실시토록 하는 부담 완화 필요</p> <p>○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장비를 설치토록 하는 부담 완화 요망</p>	<p style="text-align: center;"><b>&lt; 일부수용 &gt;</b></p> <p>○정보보호책임자 등은 타업무와 겸임이 가능토록 하여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나 본인인증·결재정보암호화 등은 불특정다수의 국민보호를 위해 불가피함</p> <p>○보안장비설치를 최소화하는 한편 대상기업을 매출액 5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여 부담을 완화하였음</p>	<p style="text-align: center;"><b>&lt; 일부수용 &gt;</b></p>

## □ 환경부 분야(53건)

건의요지	부처의견	심의결과
<p><b>&lt;환경·보전분야&gt;</b></p> <p><b>1. 하수종말처리 구역 내 자체처리 후 방류수 허용기준 완화</b></p> <p>○ 하수종말처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지만 배수시설 연결이 어려운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 처리시 방류수수질기준을 완화해주거나(BOD: 20mg/L, COD: 40mg/L, SS: 20mg/L BOD: 30mg/L, COD: 40mg/L, SS: 30mg/L)</li> <li>- 폐수를 종말처리시설로 용이하게 유입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어야 함</li> </ul>	<p>○ 수용곤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수종말처리구역 지정지역에서 하수처리시설에 연결하지 않고 자체 처리하는 사업장의 오염물질 처리기준은 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기준과 동일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 차원에서 타당함</li> </ul>	<p>○ 추후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하수처리장에 폐수유입이 불가능한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조정해주거나,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li> </ul>
<p><b>2. 오폐수 병합처리 특례 확대</b></p> <p>○ 오수는 폐수처리시설에 병합처리가 가능하나, 폐수를 오수처리시설에서 병합처리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만 인정되고 있으므로, 폐수의 오수처리시설 병합 처리가능기준의 확대에 이종투자예방 필요</p>	<p>○ 수용곤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산물판매장, 세탁시설, 산업시설의 정수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오수와 성상이 유사하여 오수처리시설로 유입하도록 하지만, 다른 업종의 폐수를 오수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적정처리가 곤란하므로 수질환경보전법령에 특례규정을 두기는 어려움</li> </ul>	<p>○ 수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수의 경우에도 오염물질의 성상이 유사하여 처리가 가능할 경우 오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li> </ul>
<p><b>3. 수영장 정수시설의 폐수시설제외 및 오수처리시설 유입 가능</b></p> <p>○ 수영장 물을 정수하는 여과기를 역세하는 경우 이를 폐수로 분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수질환경보전법령 또는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법령) 개정요망</li> </ul>	<p>○ 수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영장 정수시설의 역세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오수처리시설에 유입처리 하는 경우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추진</li> </ul>	<p>○ 수용</p>

<p><b>4. 건설현장 세륜시설의 폐수 배출시설 단속 제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송차량의 바퀴를 자동살수하는 경우 폐수배출 시설에서 제외 요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현장에 한시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세륜시설에 대하여는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용</li> </ul>
<p><b>5. 준공업지역 내 소음규제 완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공업지역의 규제대상소음 65dB(낮), 60dB(저녁), 55dB(밤) 이하는 준수가 어려우므로 공업지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요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용곤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상업 및 업무기능이 혼재한 준공업지역에 공장만 있는 전용공업지역과 동일한 소음기준 적용은 곤란함</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용곤란</li> </ul>
<p><b>6. 폐기물관리법 배출자 변경 신고 완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기물배출자는 관할관청에 폐기물배출량이 월 50%이상 증감시 변경신고토록 하고 있는바,</li> <li>- 매월 변경신고하는 변경신고 기간을 분기별 또는 연간 배출량을 기준으로 월평균 배출량을 산정하여 변경신고토록 조정 요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6개월간 배출량을 기준으로 월평균 배출량을 산정하여 50% 이상 증가한 경우 변경신고토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04.8.11)</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수용</li> </ul>
<p><b>7. 자체발생폐기물 재활용 처리시 2중규제 개선 및 별도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 면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멘트 제조시설에서 발생하는 폐면 또는 폐콘크리트를 파쇄하여 자체적으로 시멘트 원료로 재활용할 경우, 별도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절차의 면제를 요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발생된 물질을 제조시설로 등록된 시설에서 연속공정으로 재사용하는 경우 폐기물로 보지 않으므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대상이 아님</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수용</li> </ul>
<p><b>8. 폐합성수지 관리방식 개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성수지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합성수지는 고가로 거래되므로 폐합성수지는 지정폐기물에서 제외하거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용곤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합성수지를 지정폐기물에서 제외는 곤란</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가 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용곤란</li> </ul>

<p><b>9. 악취공기회석관능법 삭제 또는 완화 건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기회석관능법 기준을 삭제하거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5년 시행예정인 공업지역 배출구적용기준을 배출구 500배 기준에서 현행 1000배 기준 유지 요망</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악취는 인간의 후각에 의해 감지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므로 공기회석관능법의 삭제는 곤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업지역 악취배출허용기준은 현행 1000배를 유지</li> </ul> </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수용</li> </ul>
<p><b>10. 대기 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기(TMS)에 의한 측정결과적용방법 개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MS 측정기의 DATA를 이용한 배출허용기준 초과할음시 공정시험방법과 TMS 연속자동측정방법에 의한 상대정확도의 오차율 반영이 필요함</li> </ul> <p style="text-align: center;"> <math display="block">\frac{100\text{mg}/\text{Sm}^3 \text{ TMS}}{\text{DATA}} \pm 30\%</math> <math display="block">\frac{130\text{ms}/\text{Sm}^3 \text{ DATA}}{\text{TMS}} \pm 30\%</math>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용곤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MS 측정기는 교정오차, 상대정확도, 교정편차, 영점편차 등의 시험항목을 합격한 제품을 굴뚝에 부착하여야 함</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 <math display="block">\frac{30\%}{20\%}, \text{가}</math> <math display="block">\frac{30\%}{20\%}, \text{가}</math> <math display="block">\frac{20\%}{30\%}, \text{가}</math>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용곤란</li> </ul>
<p><b>11. 석탄보일러 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기(TMS)기준 초과인정시간 조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의 경우 재가동시 TMS 기준초과 인정시간을 15시간으로 조정이 필요함.</li> </ul> <p style="text-align: center;">1~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후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MS설치 시설중 석탄 보일러 시설은 없으며 이와 유사한 시설로 적용을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이 있다면 실태 조사를 통해 배출허용기준 초과인정시간 조정을 검토하겠음.</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태조사결과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초과인정시간을 조정 방안 검토</li> </ul> </li> </ul>
<p><b>12. 정보보호 명칭과 정보보호기간의 통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노동부(유해성·안전성 차원 화학물질심사)와 환경부(유해성 심사)의 자료 보호제도의 규정에서 화학물질의 명칭, 정보보호기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후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학물질 명칭의 통합 관련, 화학물질영업자 및 취급자로 하여금 동일한 물질에 대한 사용상 혼란이 없도록 화학물질을 총칭명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추후 환경부와</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부와 노동부 간 협의를 통해 명칭·보호기간을 조정하여 사업장의 불편사항을 해소</li> </ul> </li> </ul>

<p>등에 대해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혼란을 주고 있으므로 전반적 통합 필요</p>	<p>노동부간 충분한 협의 후 결정할 사항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학물질자료 보호기간의 통합 관련, 동일한 물질에 대해 보호기간이 상이할 경우 결과적으로 화학물질자료 보호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자료보호기간을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 추후 환경부와 노동부간 충분한 협의 후 결정할 사항임</li> </ul>	
<p><b>13. 배출업소환경관리업무 단일기관으로 통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관리업무가 도·시·군, 지방환경청으로 다원화되어 있어 분야별·사업장규모별 등으로 관리기관을 단일화 요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수용</li> <li>- 중앙정부로부터 시·도가 위임받은 국가사무를 시·군·구에 재위임하는 문제 등이 있으나, 현재 정부혁신지방분권위에서 행정업무의 지방이양 문제를 검토중</li> <li>· 또한 현재 지방환경청·지자체 등이 지역환경감시협의체를 구성·운영토록하고 있어 이를 통해 중복단속 문제 최소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수용</li> </ul>
<p><b>14. 중소기업에 대한 환경관리인 외부대행기관에 위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상 애로를 느끼고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경감을 위해 환경관리업무를 외부대행기관에 위탁가능토록 개선 요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수용</li> <li>- 기업활동규제완화특별법,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에 관한 규칙에 의해 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업체에 위탁운영이 가능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수용</li> </ul>
<p><b>15. 재활용가능한 폐기물 중 폐축매재활용업체범위 확대 필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축매를 KS인증을 받지 않은 시멘트 보강재료나 콘크리트혼화제 등으로 재활용이 가능토록 관련법령 개정요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수용</li> <li>-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04.8.11)으로 폐축매의 재활용용도 및 방법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수용</li> </ul>
<p><b>16. 소음·진동규제기준 합리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방음벽설치기준 준수시 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수용</li> <li>- 방음벽설치기준 준수만으로 시공자의 의무 면책은 수용곤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수용</li> </ul>

<p>공자의 면책조항 마련으로 원활한 공사수행을 보장하고 장비소음에 대한 규제를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비소음에 대해서는 저소음·저진동 표시장비사용시는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소음표시의 무제 및 인증제 도입을 추진 중</li> </ul>	
<p><b>17. 비산먼지관련 규제합리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을 공사비에 반영토록 관련법령에 근거 조항 마련 요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관리법에서 환경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토록 규정하고 있음</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수용</li> </ul>
<p><b>18. 건설폐기물 분리발주 개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폐기물의 용어와 처리 기준 및 절차 등 관련규정의 명확화 요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법 하위법령 규정시 반영</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용</li> </ul>
<p><b>19. 건설현장 오염토사 처리 방안 개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의 폐기물용출시험과 토양환경보전법의 토양오염공정시험의 평가기준 및 항목을 적용하고 있는바 하나의 시험으로 통합하여 적용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용곤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과 폐기물공정시험방법의 취지가 다르므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없음</li> <li>·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은 사람 및 동·식물이 토양에 접촉하여 흡수·흡입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해의 정도를 판정하기 위한 시험방법</li> <li>· 폐기물공정시험방법은 폐기물로 인한 위해성 판단 및 폐기물의 처리방법 결정에 필요한 폐기물의 성상 및 오염물질의 용출 등을 분석하기 위한 시험방법</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용곤란</li> </ul>
<p><b>20. 하수처리구역내 기업체 자체처리 후 폐수배출 방류수 수질기준 완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출허용기준 완화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용곤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수종말처리구역 지정지역에서 하수처리시설에 연결하지 않고 자체 처리하는 사업장의 오염물질 처리기준은 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기준과 동일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 차원에서 타당함</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후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하수처리장에 폐수유입이 불가능한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조정해주거나,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li> </ul> </li> </ul>

<p><b>21. 수질배출시설 허가/신고제도 완화</b></p> <p>○ “배출시설에서 새로운 특정수질오염물질 또는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발생될 경우에는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라는 현행조항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개정</p>	<p>○ 수용곤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수질오염물질이 수계로 배출될 경우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수용곤란</li> <li>- 배출시설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될 경우(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상 검출한계 이상의 농도)에는 허가(변경허가 포함)를 받도록 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가 필요</li> </ul>	<p>○ 일부수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아닌 수질오염물질의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변경신고하도록 완화하거나</li> <li>- 간단한 변경신고사항의 경우 전자문서로 접수받을 수 있는 등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 강구</li> </ul>
<p><b>22. 악취방지규제 개선</b></p> <p>○ 악취배출규제를 배출량 등을 고려치 않고 단지 배출구와 부지 경계선에서의 배출농도만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불합리 개선 요망</p>	<p>○ 기수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배출구높이에 따라 배출구와 부지경계선에서 시료채취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부과금산정시 배출량에 따라 차등 부과 중</li> </ul>	<p>○ 기수용</p>
<p><b>23. 소음·진동배출시설 변경 신고 완화</b></p> <p>○ 소음·진동배출시설의 폐쇄분에 대해 매번 신고토록 되어 있어 시설일부의 폐기가 빈번한 대형사업장의 경우 행정적 낭비가 크므로 개선요망</p>	<p>○ 수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유권해석을 통해 전체공장 폐쇄와 공정전체 폐쇄시에만 변경신고토록 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법령 개정시 보완</li> </ul>	<p>○ 수용</p>
<p><b>24. 공사장수질배출시설 개념 재정립</b></p> <p>○ 아스콘·콘크리트 등 타설 후 우천시 폐수방류기준 준수가 불가능하므로 개선요망</p>	<p>○ 수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질환경보전법상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나, 비점오염원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관련법령 개정추진</li> </ul>	<p>○ 수용</p>

<p><b>25. 대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변경신고 기준 완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배출시설규모와 관계 없이 배출시설 설치시마다 변경신고하는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출구별 동일 종류의 배출시설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 전체 방지시설의 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비율(예:30%)을 초과하는 방지시설 설치에 대하여 신고토록 함.</li> <li>- 방지시설 설치 의무면제 시설도 허가받은 동일 종류의 배출시설이 당초 대비 일정 비율(30%)을 초과할 경우에만 신고토록 함</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용근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기배출시설은 국토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 등에서 용도지역별로 시설규모, 특정 대기유해물질의 배출에 따라 입지를 제한받기 때문에 시설설치 전에 증설이 가능한지, 대기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 등의 환경적 사항을 행정관청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li> <li>- 따라서 배출구별로 일정비율 이상 증설할 경우 변경신고를 하는 방안은 수용할 수 없음</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단한 변경신고 사항의 경우 전자문서로 접수받을 수 있는 등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 강구</li> </ul> </li> </ul>
<p><b>26. 폐기물임시수집운반증을 발급 받아 자율적으로 수집운반 처리하는 규정의 개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장 폐기물이 소량 발생하는 경우 임시운반증 없이 배출업소 소유의 차량으로 운반하고, 회사차량번호를 간이인계서에 기재토록 조건을 완화</li> </ul> <p style="text-align: right;">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기물배출업소에서 위임한 차량으로 운반할 경우에도 운반차량번호를 간이인계서에 기재토록 조건을 완화</li> <li>○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 중간처리업소의 운반차량 등록대장에 차량번호와 회사명의 기재를 의무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용근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폐기물 처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li> <li>- 또한, 폐기물배출업소에서 위임한 용역업체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도록 할 경우 무허가 수집·운반업의 형태로 운영될 수 있음</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단한 신고사항의 경우 전자문서로 접수받을 수 있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 강구</li> </ul> </li> </ul>

<p><b>27. 수입업자의 폐기물부담금 산정·부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수입업자가 부담금부과 대상여부를 확인후 납부토록 되어 있어 수입업자가 부과대상여부를 모르는 경우 신고치 못하고 추후 일시에 납부하는 문제 초래</li> <li>○ 폐기물부담금 품목의 통관시 수입업자에게 바로 통지하여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 요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후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수입제품의 실시간 통관내역을 상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은 관세청이 연계된 KT-Net의 무역자동화서비스시스템(EDI)으로서,</li> <li>- 부담금 부과·징수기관인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동 시스템을 사용하여 폐기물부담금 품목의 통관시 수입업자에게 바로 통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관세청과 협의</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세청과 협조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의 시스템을 사용하여 폐기물부담금 품목의 통관시 수입업자에게 바로 통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 강구</li> </ul> </li> </ul>
<p><b>28. 소량발생 사업장 지정폐기물의 사업장내 보관기한의 조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지정폐기물의 총량이 2톤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1년기간내 보관할 수 있으나 3톤 미만인 경우도 1년기간내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조정요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후 폐기물관리법령 개정시 반영(2톤→3톤) 검토</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수용</li> </ul>
<p><b>29. 총질소, 총인 배출허용기준 완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해 폐수를 전량 유입시키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총질소, 총인 등 특정항목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의 적용을 유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수용</li> <li>○ 해당 하·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권자가 별도배출허용기준 고시를 요청하는 경우 환경부에서 검토하여 고시허용여부 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수용</li> </ul>
<p><b>30. 지정폐기물 보관기준의 합리적 적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의 구분·보관규정과 관련하여 일부 혼합된것에 대한 과잉 단속의 문제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후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 폐기물은 사업장일반폐기물 또는 생활폐기물과 처리방법이 다르므로 구분하여 보관·처리하여야 함</li> <li>- 다만, 기름걸레 등 지정폐기물의 일부가 부주의로 사업장일반폐기물에 혼합된 경우의 보관·처벌기준 적용에 대한 보완방안을 검토하여 지도·점검 규정 등에 반영</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폐기물의 일부가 부주의로 일반폐기물에 혼합된 경우의 보관·처벌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보완방안을 시행규칙이나 지도·점검규정에 반영하는 방안 강구</li> </ul> </li> </ul>

<p><b>31. 페인트 저장용기 처리방법의 합리적 개선을 통한 자원낭비 예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기계장치·설비 등에 도색된 상태로 페인트의 용출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 폐기물(고철)로 분류하고 있는 바와 같이 페인트 저장 용기의 내벽에 묻거나 굳어 있는 페인트 용기의 경우도 일반 기계장치·설비처럼 용출 우려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일반폐기물로 분류(고철)하여야 하고 잔류 페인트의 중량이 총 중량의 5%를 초과 하거나 액상으로 보관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정폐기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후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페인트를 담았던 용기나 폐유를 담았던 용기의 폐기물 분류에 대해서는 배출실태, 환경위해성 등에 대한 조사·연구 및 관련 전문가 검토를 통해 개선방안 마련</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페인트를 담았던 용기나 폐유를 담았던 용기의 폐기물 분류에 대한 연구검토를 통해 사업장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 강구</li> </ul> </li> </ul>
<p><b>32. 사업장 종 구분 산정기준 변경 관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금속광물제조업 등의 배출시설인 경우 방지시설에서 제거된 먼지가 원료 또는 제품으로 회수되는 부분은 오염물질 발생량을 감할 수 있도록 종규모 산정방식을 고시로 보완하고 있으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장설비는 고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관련업종의 종이 상향될 여지가 있고, 입지제한 등 규제가 강화되므로 고시의 적용대상에 포장설비도 추가하여 발생량을 감할 수 있도록 개정</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용곤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지시설에서 포집된 먼지의 전량이 제품 또는 원료로 회수되는 경우 생산설비공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방지시설 후단의 농도 값을 적용하여 발생량을 산정한 것이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장시설의 방지시설에서 포집된 먼지는 제품이나 원료로 사용되지 않아 회수시설로 적용을 배제한 것임.</li> </ul> </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용곤란</li> </ul>
<p><b>33. 굴뚝자동측정기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적용시 공기비 3배 이상시 표준산소농도 적용 제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멘트 소성로 가동개시, 가동중지 및 재가동시 표준산소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용곤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준산소농도 적용은 오염물질의 희석방지를 위한 규정이고,</li> <li>- 가동중지 및 정지, 재가동시 사례에서 제시한 오염물질의</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용곤란</li> </ul>

<p>도 적용제외 기준을 공기비 3배에서 공기비 1.5배 또는 2배로 완화요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연소 공기비 3배시 실측산소농도 : 18.3%</li> <li>- 실연소 공기비 2배시 실측산소농도 : 17.0%</li> <li>- 실연소 공기비 1.5배시 실측산소농도 : 15.70%</li> </ul> <p>○ 소성로 가동개시, 가동중지 및 재가동시 오염물질 농도가 순간적으로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공기비 적용 제외 기준을 완화해야 함</p>	<p>실측 농도(40mg/Sm<sup>3</sup>)가 배출허용기준(50mg/Sm<sup>3</sup>)의 80% 정도가 되는 것은 방지시설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으로 일부 시멘트 소성로의 방지시설을 여과집진시설 등의 방지시설로 개선하면 현행 기준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음</p>	
<p><b>34. 시멘트 소성로에 폐기물 재활용(페타이어, 폐플라스틱 등)을 활성화하는 규제 완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시멘트소성시설로 폐기물처리시 처리시설신고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li> <li>○ 시멘트소성로가 폐기물처리시설 이상의 성능을 갖추고 오염물질 배출이 허용기준치 이하일 경우 별도규정을 추가하거나 단서조항을 두어 설치승인 및 신고사항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용곤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기물의 설치승인 및 신고규정은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 적정처리 등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적절한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고, 용광로 등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설치승인 및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기는 곤란함</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및 신고 규정을 간소화하는 등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 강구</li> </ul> </li> </ul>
<p><b>35. 시멘트 제조시설(시멘트 소성로)에서의 페타이어 재활용을 제한 규제 완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타이어 재활용방법중 페타이어를 시멘트제조시설의 소성로에서 처리 비율이 2005년말까지 80%이하(그 이후 70%이하)로 재활용하도록 하고 있음.</li> <li>○ 페타이어 공급량 감소우려로 가동재활용을 제한범위를 삭제하거나 기존의 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후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기물의 재활용에 있어서 물질재활용과 에너지재활용의 적정비율이 규정되어 있는 바는 아니나, 에너지재활용 시장 규모가 과다하게 커지는 것은 궁극적인 재활용 목적인 물질재활용 시장의 위축을 가져오게 되므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비율에 따라 재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재활용비율</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후검토</li> </ul>

	에 대하여는 재활용 시장의 경제사회적인 여건 등을 고려한 중장기적 검토 필요.	
<b>36.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 보정치 적용시 지역별 내용 변경</b> ○ 기존(1993.12.31일 이전)에 국토관리법상 도시지역 외의 공업지역(-20DB)이었다가 '94년부터 준도시지역 중 산업촉진지구(-10DB)로 된 지역은 현재 국토관리법상 도시지역의 공업지역에 준하는 소음보정치인 -20dB를 적용한다는 단서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추후검토 - 지역이 산업촉진지구로 변경된 후 공장주변에 설치된 정온시설 현황을 파악한 후 단서조항 삽입여부 검토	○ 일부수용 - 준공업지역의 소음보정치인 -15dB를 적용 검토
<b>37. 합성수지포장재질 연차별 줄이기 기준의 의무 이행률 조정</b> ○ 컵라면 용기 제조·수입·판매자의 연차별 합성수지포장재 대체율 조정 요망 '04년 : 20% 이상 '05~'06년 : 30% 이상 '07년이후 : 35% 이상 대체 ⇒ '07년 기준은 유지하되 '05~'06년도 기준완화	○ 수용곤란 - 합성수지 포장재는 컵라면 뿐만 아니라 계란포장, 농·수·축산물 받침접시 등으로도 사용하고 있어 컵라면만 예외적으로 완화하기 곤란 · 국내기술 수준으로 종이재질로의 대체가 가능	○ 보류 - 합성수지재질과 종이재질포장재의 환경에의 영향 비교·검토 자료 규계위위원회 송부(연말限) - 환경부가 관련사항을 차기 본회의에 보고
<b>38. 폐기물관리법 일괄 적용에 따른 기업규제 사항 완화 조치</b> ○ 감염성 폐기물 관련 기관이 학술연구기관일 경우에도 의학, 치과의학, 한의학, 약학, 수의학에 한정되어 있어 감염성이 높은 바이러스 등의 연구기관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해당법률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감염성 폐기물 대상 분류시 기관이나 폐기물 종류뿐만 아니라 연구하거나 취급하는 물질 종류에 따른 규정도 추가하는 것을 고려	○ 추후검토 - 감염성폐기물 발생기관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시험연구기관에 대하여도 감염성의 여부에 대한 조사 연구를 통해 생물학, 유전공학 등의 시험·연구를 하는 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04.8.11	○ 추후검토

<p><b>39. 대기배출시설 종산정 변경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기배출시설 중규모 산정시 대기방지시설 통과후의 발생량으로 계측하는 방식으로 변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수용</li> <li>○ '04.1부터 변경시행된 현재의 종산정방법의 변경은 곤란하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스콘 제조시설에서 발생하는 먼지량 등과 관한 업계의 요구사항은 국립환경연구원에서 검토하며,</li> <li>- 종 상향에 따른 아스콘·레미콘 업종의 입지제한 문제는 관련부처와 검토·협의</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수용</li> </ul>
<p><b>40. 재활용(괴재 slag) 방치 폐기물 예치금 제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기물로 분류된 괴재(slag)를 재활용하여 규산질 비료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slag를 야적 보관하여 사용중인 경우 방치폐기물을 예치금 대상에서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용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기물을 재활용 목적으로 수탁받았으나, 부도로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장기간 방치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음</li> <li>- 폐기물 재활용신고자의 방치 폐기물처리 이행보증제도는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 목적으로 배출자로부터 수탁받은 후 부도 등의 사유로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하여 방치할 경우 이를 처리하기 위해 도입된 보증제도로써 예치금 대상에서 제외 곤란</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용불가</li> </ul>
<p><b>41. 복합악취 및 단일악취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설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출구의 정확한 정의와 측정기준이 배출구일 경우와 부지경계선인 경우를 명확히 규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출구는 물질을 밖으로 밀어서 내보내는 구멍으로 정의되며, 배출구와 부지경계선에서의 시료채취방법은 악취방지법령 제정안에 규정</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용</li> </ul>
<p><b>42. 악취배출시설 규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악취배출시설의 정의 및 규정을 더 세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위공정 중 악취물질 배출 가능성이 있는 시설로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시설허가제도 시행</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악취는 복합오염으로서 사업장 단위로 규제</li> <li>- 허가제도는 규제를 강화하는 문제가 있어 악취방지법에서는 신고제도로 규제를 완화</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수용</li> </ul>

<p><b>43.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관련 서식에 동일내용 (악취배출시설, 배출공정)을 기재토록 되어 있으며</li> <li>- 동 시설의 규격과 수량은 여러개의 단위시설이 밀집해 있어 기재곤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수용</li> <li>- 여러개의 단위시설 들이 밀집해 있는 경우 배출공정전체의 규격과 숫자를 기재하면 됨</li> <li>· 서식의 변경은 어려우나 악취배출시설과 대기배출시설이 동일할 경우,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시 악취방지계획을 포함하여 신고할 경우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같음하도록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에 반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수용</li> </ul>
<p><b>44. 악취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측정관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악취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기기분석법으로 하여야 하며, 관능법은 기기분석여부를 결정하는 판단의 기준에 국한하여야 함.</li> <li>- 관능법은 참여자에 따라 판정이 달라질 수 있어 객관적 판단에 한계가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용곤란</li> <li>- 악취는 감각공해로서 인간의 후각에 의하여 감지되는 것이며 외국에서도 후각에 의하여 측정하고 있음</li> <li>- 또한, 악취는 복합오염이기 때문에 기기분석법으로는 복합적인 악취물질을 측정할 수 없음. 따라서 기기분석법은 단일악취물질에 대한 측정방법이 될 수밖에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후검토</li> <li>- 악취물질 배출허용기준 제정시 측정방법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li> </ul> <p style="text-align: center;">2</p>
<p><b>45. 드럼 등 보관용기에 보관하는 지정폐기물의 옥외보관 허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유, 폐유기용제를 드럼 등의 용기에 담아서 보관할 경우, 옥내보관시 오히려 화재·폭발 위험이 상존하므로, 내용물 유출·침출방지 등 적절한 시설을 갖춘 경우 옥외보관을 허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용</li> <li>- 향후 폐기물관리 법령 개정시 반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용</li> </ul>
<p><b>46. 폐기물 보관기간 연장 요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폐기물의 보관용기에 따른 보관기간 조정</li> <li>- 드럼(Drum) 또는 저장탱크에 보관하는 경우 : 1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용곤란</li> <li>- 지정폐기물은 장기간 보관할 경우 보관과정에서 누출 등으로 2차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용곤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패로 인하여 악취가 발생할 수 있는 물질을 보관하는 경우 : 90일</li> <li>○ 빗물 유입 차단과 유출의 위험이 없는 경우 : 1년</li> </ul>	<p>속한 처리가 불가피하여 보관기간 연장 곤란</p>	
<p><b>47. 식품위생 확보를 위해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무상제공금지 규제 완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위생 확보를 통한 국민보건의 증진 또한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음식료품의 식품위생 확보를 통한 국민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음식료 제품을 담기 위하여 합성수지재질의 봉투를 사용하는 경우는 무상제공금지 대상에서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용곤란</li> <li>- 합성수지 1회용품 사용규제는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자 도입한 제도임</li> <li>- 따라서 제품으로 인한 식중독 우려등 위생문제는 1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할 것이 아니라 생산단계에서 별도로 포장하여 관리하여야 함</li> </ul> <p style="text-align: center;">가</p> <p style="text-align: center;">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용곤란</li> </ul>
<p><b>48. 대형구조물에 대한 옥외도장 작업허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형구조물(50,000m<sup>3</sup> 이상으로 도량시설 진입불가 품목)은 선박과 같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용</li> <li>- 선박건조공정의 야외구조물 및 선체외판 도장시설, 높이 또는 폭 50m 이상, 길이 100m 이상인 구조물의 야외도량 시설, 수상구조물제작공정의 야외구조물 도장시설은 배출시설에서 제외하도록 법령 개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용</li> </ul>
<p><b>49. 하수처리구역내의 폐수배출시설이 종말처리장 유입제외 허가를 득한 경우, 폐수 배출허용기준의 완화 적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용곤란</li> <li>- 하수종말처리구역 지정지역에서 하수처리시설에 연결하지 않고 자체 처리하는 사업장의 오염물질 처리기준은 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기준과 동일한 배출허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후검토</li> <li>- 사업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하수처리장에 폐수유입이 불가능한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조정해주거나,</li> </ul>

<p>허가를 받은 사업장의 경우 형평성 차원에서 일반지역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요</p>	<p>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 차원에서 타당함</p>	<p>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p>
<p>&lt;노동·산업분야&gt;  <b>50. 폐페인트 캔 처리시 지정폐기물 분류처리</b>  ○ 현재 폐페인트 캔은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으나 이의 처리와 관련 개선요망  - 1안:고철류(일반폐기물)로 분류·처리  - 2안:지정폐기물분류기준 완화(예:잔류페인트가5%이내인 경우 고철로 인정)  - 3안:제강회사에서 처리가능토록 재활용신고의무 면제</p>	<p>○수용  - 폐페인트·폐유 용기의 폐기물 분류에 대해 배출실태·환경위해성 등에 대한 조사·연구, 전문가 검토를 통해 개선방안 마련(1,2안)  (3 )</p>	<p>○수용</p>
<p><b>51. 도장시설 내 탄화수소(THC)농도규제</b>  ○ 도장시설에 대한 규제를 삭제하거나 규모가 큰 시설에 대한 기준을 소규모 시설과 동일하게 완화(규모별 50ppm/100ppm→100ppm으로 통일요망)</p>	<p>○ 수용곤란  - 대기오염의 심각한 요인인 오존의 원인물질인 총탄화수소를 배출하는 시설을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기는 곤란(도장시설은 2000년 규제대상에 추가하여 2005년부터 시행할 예정임)  - 배출시설의 규모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자는 의견은 형평성에 어긋남</p>	<p>○수용곤란</p>
<p>&lt;에너지·자원분야&gt;  <b>52. 생태계 보전협력금 부과 기준</b>  ○ 국토계획이용법에 의한 토지 용도에 따라 지역계수를 차등적용하고 있으나 광업의 경우 사업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므로 계획관리지역(준농림지역)의 지역계수를 준용요망</p>	<p>○ 수용곤란  - 지역계수는 개발사업으로 훼손되는 지역의 생태적 보전 가치와 연결되는 개념이지 사업이 계획적으로 추진되는지 여부가 판단기준이 아님  - 생태적보전가치와 연계해야하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 건의 사항 수용곤란</p>	<p>○수용곤란</p>

<p><b>53. 백두대간관리구역 범위내 채광제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백두대간보호법('05 시행예정)의 제정목적 내에서 규제시행</li> <li>- 기개발중에 있거나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사업에 대한 지속가능한 개발 보장</li> </ul>	<p>○수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에 경과규정을 두어 법 시행일('05.1.1)이전에 개발사업에 대한 승인·인가·허가 등을 얻은 경우 백두대간보호지역 내에서도 사업추진 가능</li> </ul>	<p>○수용</p>
---	---	------------

□ 해양수산부, 해경청 분야(5건)

건의요지	부처의견	심의결과
<p><b>1. 오염물질의해안배출관리법안 입법추진 중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기 법안은 환경부의 수질환경보전등과 이중규제 등의 문제 발생 예상되어 입법추진 중단 요망</li> </ul>	<p>&lt; 수용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오염물질의해안배출관리법안은 국무조정실 및 청와대의 조정으로 입법추진 중단된 상태임</li> </ul>	<p>&lt; 수용 &gt;</p>
<p><b>2. 외국적선 일시적 내항운항 규제 개선(해수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적선을 용선해야 하는 경우 신고 및 수리'절차를 거쳐야 함</li> <li>- 신고절차로만 외국적선을 용선할 수 있도록 개정</li> </ul>	<p>&lt; 수용 곤란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각국에서 자국의 국내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국적선의 국내항운송에 대해 공통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사항으로 수용 곤란</li> </ul>	<p>&lt; 수용 곤란 &gt;</p>
<p><b>3. 해양배출가능 폐기물의 대상 및 기준 완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오염방지법제35조 및 동시행규칙제6조제1항이 삭제되었으므로,</li> <li>- 해양배출가능 폐기물의 대상 및 기준완화(시행규칙 별표14, 별표16)</li> </ul>	<p>&lt; 수용 곤란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양배출제도는 육지에서 처리 곤란한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여 육상환경의 보전 및 폐기물의 안전처리가 목적</li> <li>○배출량의 지속적 증가 및 국제적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로 이를 위한 법령정비가 시급한 실정으로 수용 곤란</li> </ul>	<p>&lt; 수용 곤란 &gt;</p>

<p><b>4. 해양시설안의 기름기록부 작성 및 유조선의 해양이용 시설 이용현황보고 간소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름의 선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해양수산청에 전자문서(PORT-MIS)로 통보하는 경우, 기름기록부 작성 의무 면제</li> <li>○해양시설의 폐기물처리상황, 50톤이상 유조선의 이용현황 보고 간소화</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lt; 일부수용 &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자문서는 항만의 관리 및 경영 등에 관한 것으로 이를 면제시 기름기록부에서 요구되는 정보는 파악되지 않아 수용불가, 기록사항 간소화는 추후 검토</li> <li>○해양시설의 폐기물처리상황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보고 하는 것으로 수용곤란</li> <li>○50톤이상 유조선의 이용현황 보고는 법령개정으로 보고의무 이미 삭제</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lt; 일부수용 &gt;</b></p>
<p><b>5. 해양시설 관리주체를 환경부에서 통합관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시설 발생 기름 처리기준 등 수질환경보전법상 기준 준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름은 수질환경보전법상의 5ppm적용(해양오염방지법은 15ppm)</li> <li>- 유해액체물질은 수질환경보전법과 같이 처리업체 등에 위탁 처리 및 일률적 배출허용기준(가지역) 세분화</li> </ul> </li> <li>○해양시설 관리주체를 환경부에서 통합관리</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lt; 일부수용 &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양시설발생 기름 등 처리기준 및 방법은 수질환경보전법상 기준 준용.</li> <li>○육상환경과 해상환경은 연계성을 갖고 있어 이중규제라 할 수 없고, 폐기물 배출사고 방지를 위한 해양경찰청의 검사 및 적정 처리 여부 등 확인은 해경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 환경부 통합관리 수용 불가</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lt; 일부수용 &gt;</b></p>